

코로나19 영업제한업종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고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집합금지 포함)으로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지원대상

- 서대문구 소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체(대표)

2.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장 : 폐업전 서대문구 사업자등록
- 폐업일 : 2020.3.22. ~ 지원금 신청일까지 폐업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소상공인 자격기준
 - 매출액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5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영업제한업종 5인 미만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업종(집합금지 포함)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취식금지)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 영화관·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접판매홍보관, 300㎡이상 백화점 및 대형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 ※ 영업제한 적용기간은 시설별로 다르므로 접수 후 검토 결정

3. 제외대상 :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 2021년도 서대문구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중복지급 제외)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대상),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 부정수급 확인시 반납 조치

4. 지원금액 : 50만원(계좌 지급)

※ 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1명만 지급

5.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2022년내)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신청

- 이메일 : [kg0914@sdm.go.kr](mailto:khg0914@sdm.go.kr)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신청후 5일 이내 접수확인문자를 못받았을 경우 02-330-1918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방문신청 :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엘리베이터 옆)

7. 제출서류 : 신분증(지참), 통장사본, 아래 서류

※ 이메일 신청시 해당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신청서 등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 서식1(붙임1파일)·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 : 서식2(붙임1파일)
폐업일 확인	<u>폐업사실증명원 1부</u>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소상공인 여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확인서	1부	<u>아래 중 1부 선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팀목자금, 베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확인서 없는 경우	1부	<u>아래 중 1부 선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공동대표 가족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대표만 제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민원발급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발행인 : 신청인 기준)
타인계좌 수령 요청시	신용불량 등 증명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붙임1 서식 4-1) ② 계좌이용동의서 및 협약서 1부(붙임1 서식 4-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동의서(계좌 제공인) 1부 (붙임1 서식 4-3)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⑥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관련 증빙 1부
위임신청	위임자 :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 신분증	1부	위임장(붙임1 서식 3)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는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안내

- 인터넷 국세증명 발급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누리집 Home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정부24(www.gov.kr) 누리집 Home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24(www.gov.kr) 누리집 Home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어디서나 민원
 - 전국 시 · 군 ·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즉시 발급 가능

8. 통지 방법 : 문자 안내

- 지급대상 여부 안내(1차) 후 지급완료 문자 안내(2차)
 - ※ 이메일접수시 접수확인 문자 발송, 지원조건 미충족 시 서류보완 안내 등

9. 지급 방법 : 적격 대상자에게 접수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좌 지급 원칙

10. 이의신청

- 부적격인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는 7일 이내 문자 통지)

11. 문 의

- 서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구청 6층) : 02-330-4953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2-330-1071, 1918

붙임 1. 신청서식 각 1부.

2. 자주묻는 질문답변 1부.

【참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